

Ⅲ. 임직원의 책무 및 이해상충이 있는 업체와의 거래에 대한 지침

1. 임직원은 근무시간을 포함한 회사의 비용 및 자산이나 정보를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고,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과 정보를 최선을 다하여 보호한다.

1.1 임직원은 부업을 포함하여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.

-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1주일 이내 서면으로 담당중역을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고, 관리본부에서 서류를 보관한다.

1.2 임직원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관련사와 관련된 주식투자를 금지한다.

1.3 임직원은 내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특히 전산 및 PC의 자료 보호에 노력한다.

2. 임직원 간의 부조 및 금전 거래

2.1 임직원간의 과도한 금전차용 (5,000,000원 초과) 이나 대출보증 (5,000,000원 초과)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

- 불가피할 경우는 1주일 이내에 담당 중역에게 서면으로(이메일 포함) 신고한다.

2.2 임직원 간에 인사청탁을 할 수 없고, 과도한 부조나 선물 제공 등은 금지한다.

2.3 상사에 대한 과도한 선물 (1인당 30,000원 초과 제공, 총액 100,000원 초과) 이나 과도한 향응 (1인당 30,000원 초과) 을 제공할 수 없다.

3. 거래선과의 선물, 향응, 금전거래

3.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거래선으로부터 과도한 향응을 (1인당 100,000원 초과) 받을 수 없다.

- 불가피하게 과도한 향응을 받았을 경우는 1주일 이내에 서면(이메일포함)으로 직속상사에게 신고하고, 직속상사는 담당중역에게 신고한다. 관련자료는 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.

3.2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거래선으로부터 과도한 금품 (현금 및 상품권, 교환권 등의 유가증권) 및 선물을 (100,000원 초과) 받을 수 없다.

- 불가피하게 과도한 금품 및 선물을 받았을 경우는 3일 이내에 직속상사에게 신고하고, 직속상사는 이를 취합하여 담당중역에게 신고한다. 관련 자료는 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.

- 담당중역은 이를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,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처분한다.

- 경조사에 과도한 부조금을 받을 수 없다.

- 자녀의 돌, 부모의 수연 등에는 거래선을 초청할 수 없다. 다만 건설현장, 공장 등에서 오랜 기간 같이 근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- 3.3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거래선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을 경우는 직속상사에게 1주일 이내 서면 신고를 (이메일 포함) 해야 하고, 직속상사는 이를 취합하여 담당중역에게 신고한다.
- 3.4 임직원은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로부터 금전의 대차, 건물의 임대차 및 친인척 (사촌 이내의 친가, 외가, 처가) 이 소유한 업체와의 거래 등 재정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없다.
 -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1주일 이내 담당중역에게 서면(이메일 포함)으로 신고한다.
- 3.5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에 대한 투자, 차용, 피 고용관계 등은 금지한다.
 -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대표이사의 서면 허가를 받고, 서류는 담당중역이 관리본부에 이관 시킨다.
4.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공정하게 거래한다.
 - 4.1 경영진 및 팀장 이상은 이해관계서술서를 1년에 한 번 작성하여 담당중역에게 제출한다.
 - 4.2 제출한 이해관계 서술서는 인비로 취급하고,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보관한다.
 - 4.3 임직원은 이해관계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서술서를 설명하고, 이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업체들에게 천명한다.
5. 본 강령을 위반한 것이나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에 대하여, 선의나 정직성을 바탕으로 한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자에 대한 정보의 누설 등을 포함하여 신고자에 해가 되는 행위를 금지한다.
 - 5.1 회사에 영향이 큰 위반 사항 신고를 (회사 자산의 횡령 등) 받은 상사 나 담당중역은 즉각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6. 상기 내용중 담당 중역은 접수된 사안을 검토후 관리 본부에 이관/보관케 한다.
7. 본 지침 위반시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윤리 위원회(인사 위원회)에서 처리토록 하며,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의 범위를 확정하여 이를 해당부문에 통보한다.
 - 7.1 본규칙 위반시 적용되는 징계사유 및 항목은 첨부#3(윤리 행동규칙 벌칙 권고 기준)와 같다.
8. 고발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신고자에게는 실질적인 유형의 효과를 발생시킨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 할 수 있다.

부칙

1조 타 규정과의 관계
본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내의 관련 규정이나 법령을 정한다.

2조 부록
첨부 #1. 서약서
첨부 #2. 부당 이익 수수 확인서
첨부 #3. 윤리행동 규칙 벌칙 권고 기준

3조 시행시기
본규칙은 2020년 8월부터 시행한다.

끝.